



농약 개발

막대한 자본 · 기간 · 기술 필요

주로 선진국서 개발, 국내 포장서 반드시 농약품목등록시험 거쳐야

■ 홍보부

■ 농약의 등록제도

어떤 물질이 농약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려면 설계부터 합성까지 일련의 모든 농약개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되어야만 가능하다. 농약의 신물질 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기간, 첨단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주로 선진국에서 개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원제 400개중 불과 수개만이 개발되었을 뿐이다. 선진외국에서 개발된 농약도 국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내 포장에서의 약효·약해 유무와 작물, 토양, 수중잔류 여부 및 독성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농약품목등록시험을 거쳐야 한다.

농약품목이 국내적응시험과 국내에 등록되기까지의 과정 및 시험의 종류는 그림과 같다.

농약의 품목등록을 위해 필요한 시험의 종류를 보면 △약효·약해시험(2~3년간 3회

실시, 단 제초제는 6회) △독성시험 : 급성(경구, 경피, 흡입)독성, 어독성, 피부자극성, 안점막자극성, 피부감작성 △환경생물 독성시험 △잔류성시험 : 작물잔류, 토양잔류, 수중잔류 △이화학적 분석 △경시변화 시험 등이다. 품목등록 신청시에 농약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농약원제에 대한 막대한 자료와 국내에서 시험한 각종시험 성적 등 100가지 이상의 성적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 검토를 받는다.

이때 검토항목은 크게 구분하여 보면 △품질·약효·약해 △작업자(농작업종사자 등)의 안전성 △소비자의 안전성(농작물에 잔류한 농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환경에의 안전성(유용생물, 수서생물에 미치는 영향, 환경중에서의 잔류 및 거동) 등이다.

농촌진흥청에 등록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첨부된 시험성적서와 등록용 시료는 농업과학기술원으로 송부되어 각종 서류 및 시료를 검사하도록 한다.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등

농약등록 절차



록시험이 시험의 기준과 방법에 의해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와 시험결과가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용 시료가 검사기준에 적합하고 등록시험 당시의 시료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검토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 등록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소위원회는 안전성소위원회와 품목관리소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은 농림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의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임원으로 구성된다. 이화학

적 자료와 약효·약해 시험결과에 대하여는 품목관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등록적합 여부를 의결하고 독성 및 잔류성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안전성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품목별 안전사용기준도 안전성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품목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